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전시 시설을 사용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성능점검장 개설에 소극적인 지역에서 성능점검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자의 신고자격 및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차의 성능·상태점검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안 별표21의2 제1호)

- 1)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성능점검시설 조항 삭제
- 2)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 등을 명확히 함.

나.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 등 완화(안 별표22)

- 1) 성능점검 신고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자의 자격을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기능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확대

- 2) 정비업 사업장에서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자의 시설·장비와 성능점검 시설·장비의 중복을 허용

다. 친환경차의 성능상태점검 기준 신설(안 별표22, 별지 제82호)

-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용연료 유형에 전기차, 수소전기차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점검항목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추가
- 2) 성능상태점검 시설·장비기준에 친환경차 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차 점검을 하려는 성능점검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항목 정비(별지 제82호)

- 1) 성능점검이 필요한 일부항목을 성능점검기록부에 추가·수정하고, 중고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책임소재·점검기준·안내사항 등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4~ 3.24) 예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의2 제1호 라목을 삭제하고, 주) 제2호 중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를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 전시목적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로 한다.

별표 22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삭 제	· 삭 제
마. 기타	·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 전시 목적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

구 분	자 격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1. 성능점검책임자 :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삭 제
시설·장비	1. 핏트 또는 리프트 2. 자기 진단기 3. 도막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청진기 6. 멀티테스터 7. 타이어딤게이지 8. 배터리전압측정기 9. 비중계 10. 가스누출감지기 11. 배기가스측정기(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주

1. 성능·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시설·장비로 2 이상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정비업 사업장 또는 정비업 사업장과 붙어있는 장소에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가 정비업자의 시설·장비와 중복되는 때에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동 시행규칙 [별지 82]의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점검하려는 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튜닝에 따른 규정 [별표 5])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절연저항시험기와 보호장구(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 등)를 갖추고 성능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제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① 차명	(세부모델 :)		② 자동차등록번호		
③ 연식	④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최초등록일			⑦ 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⑥ 차대번호				[]무단변속기 []기타()	
⑧ 사용연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기타				
⑨ 원동기형식	⑩ 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가격산정 기준가격	만원

자동차 종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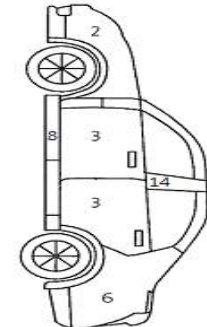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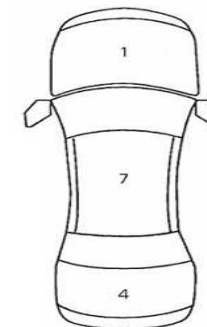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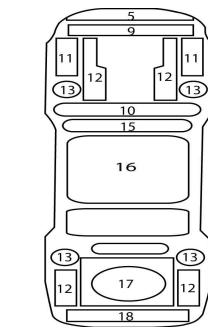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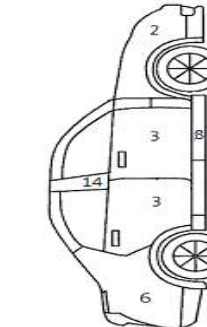
(색상, 주요옵션,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⑪ 사용이력	상 태	항목 / 해당부품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양호 []불량 []많음 []보통 []적음	현재 주행거리 []	만원
차대번호 표기	[]양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만원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 ppm, %	만원
튜닝	[]없음 []있음 []적법	[]불법 []구조 []장치	만원
특별이력	[]없음 []있음	[]침수 []화재	만원
용도변경	[]없음 []있음	[]렌트 []영업용	만원
색 상	[]무채색 []유채색	[]전체도색 []색상변경	만원
주요옵션	[]있음 []없음	[]썬루프 []네비게이션 []기타	만원
리콜대상	[]해당없음 []해당	리콜이행 []이행 []미이행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상태표시 부호 : X (교환), W (판금 또는 용접), C (부식), A (흡집), U (요철), T (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	---	--	---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없음 []있음	단순수리	[]없음 []있음
⑬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외관부위	1랭크	[]1. 후드 []2. 프론트펜더 []3. 도어 []4. 트렁크 리드 []5.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만원
	2랭크	[]6. 쿼터패널(리어펜더) []7. 루프패널 []8. 사이드실패널	
주요골격	A랭크	[]9. 프론트패널 []10. 크로스멤버 []11. 인사이드패널 []17. 트렁크플로어 []18. 리어패널	
	B랭크	[]12. 사이드멤버 []13. 휠하우스 []14. 필러패널 ([]A, []B, []C) []19. 패키지트레이	만원
	C랭크	[]15. 대쉬패널 []16. 플로어패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 주요장 치	항목 / 해당부품		상 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자기진단	원동기		[]양호 []불량	만원
	변속기		[]양호 []불량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만원
	오일누유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블록 / 오일팬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 유량		[]적정 []부족	
	냉각수 누수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수 []누수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냉각수 수량	[]적정 []부족	
	커먼레일		[]양호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수동변속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기어변속장치	[]양호 []불량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불량	만원
	등속조인트		[]양호 []불량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불량	
	디퍼렌셜 기어		[]양호 []불량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작동상태	스티어링 펌프		[]양호 []불량
		스티어링 기어(MDPS포함)		[]양호 []불량
		스티어링조인트		[]양호 []불량
		파워고압호스		[]양호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불량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배력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불량	만원	
	시동 모터	[]양호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불량		
	실내송풍 모터	[]양호 []불량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불량		
	윈도우 모터	[]양호 []불량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 상태	[]양호 []불량	만원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양호 []불량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양호 []불량		
연료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만원	

자동차 기타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항 목		가격조사·산정액
수리필요	외장	[]양호 []불량	내장	[]양호 []불량
	광택	[]양호 []불량	룸 크리닝	[]양호 []불량
	휠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만원
	타이어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유리	[]양호 []불량		
기본품목	보유상태	[]있음 []없음 ([]사용설명서 []안전삼각대 []잭 []스패너)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 만원

이 가격조사·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⑩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성능·상태점검자	- 8 -
	가격·조사산정자	

유 의 사 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함.)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⑫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6. 체크항목 판단기준(예시)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되,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7.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한정)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8.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9.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재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0.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이란

※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앞 면)

(뒷 면)

서 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자동차가격조사·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 일 - 매수인 (서명 또는 인)